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자치부 재정과

회계 · 계약 운영 관련

- 회계제도팀 제공 -

1. 선금지급율의 결정

【질 의】

선금을 지급시 30억원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하한선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 업체에서 100분의 45를 신청할 경우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03. 4.30)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수급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신용도 등을 참작하여 동지급요령 제2조제1항에서 제시된 공사·물품의 제조 및 용역·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계약금액별 지급율 이상을 선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30억원 공사의 경우 하한 지급율인 100분의 30을 초과한 100분의 45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이나
 -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선금의 신청액이 동지급요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 계약상대자의 신용도 및 이에 따른 계약보증서 등 채권확보 여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0분의 45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급량비의 현금지급 가능 여부

【질 의】

근무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에 주변식당이 거의 없어 근무 중 특정한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하는 것이 곤란한 바

- 이와 같은 경우 급량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특근매식 등 급량비는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73호)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에 의해 지출하고 매출전표를 증빙서류로 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 특별단속 등), 관용차량 운전원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특정식당 등을 이용한 지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기관의 근무여건이 상기에 예시된 경우와 유사한 지를 판단하여 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급량비 지급대상자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의 일치 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근무시간 종료후 2시간 초과 근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2시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량비 지급도 불가능한 지 여부와 만약 급량비 지급이 가능하다면 초과근무대장이 아닌 별도의 증빙자료로 갖추어야 할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회 신

- 초과근무수당 지급 과 특근매식비 등 급량비 지급에 적용되는 시간대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치하지는 않는 바,
- 예를 들면 오후 6시 퇴근인 날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최소한 오후 8시 이후 근무자부터 적용되지만, 특근매식비 등 급량비는 원칙적으로는 오후 6시 이후 근무자부터 적용되므로
- 근무종료 후 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퇴근한 직원들도 특근매식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의 증빙을 위해서는 특근매식비 지급여부에 대한 초과근무대장이외의 별도의 기록서식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해외출장시 물품구입을 할 경우 회계처리 절차

【질 의】

보건소에서 최첨단 의료기기구입이 필요하나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기기로 구체적인 성능과 사용방법 등을 알 수 없어 동기기 생산국가에 현지출장하여 동기기에 대한 시험 등을 거쳐 구입코자 추진중인 바

- 이러한 경우 물품구입에 따른 회계처리 절차는 어떠한 지

회 신

- 전쟁발생과 같은 긴급사태 발생시나 해외에서 물품구매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리관, 지출원 등 회계관직 공무원들을 거쳐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출장자에 대해 임시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임명하여 동출장자들에게 물품구입에 대한 계약 및 지출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 물품대금 지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구입의 특성상 국내에서 검수한 후에 신용카드 또는 계약상대자 계좌입금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 계약상대자가 구매자가 외국이라는 특성을 감안 일정율의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사전에 일정율의 선금을 지급하고 검수후에 잔액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연간 단가계약을 타관서에서 계약체결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군에서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구입을 위해 제조사인 ○○사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바

- 경리관을 달리하는 제1관서와 읍면에도 ○○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수의계약 불가시 계약체결시 적용한 단가는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공사의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9조(지출원인행위)의 규정에 의해 경리관이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상기의 경우와 같이 해당군의 본청과 경리관을 달리하는 제1관서 및 읍·면의 경우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는 본청과 다른 별도의 계약행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 수의계약 적용여부는 본청의 계약과 상관없이 제1관서 및 읍·면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본청에서 계약체결시 적용한 단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제1관서 등 기타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나 해당기관에서 계약업무에 사전참고자료로는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6. 보조금의 채권압류 가능여부

【질 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부적지 감귤원정비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자 하는 바 이의 가능여부

회 신

- 민간이전 보조금이 지방세 채납자에게 지급될 때 동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압류가 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바
 - 지급은 되었으나 일정기간의 사업완료후에 동사업의 수행정도에 따른 사후정산이 필수적인 보조금의 경우 채권압류가 곤란할 것이나 사후정산없이 확정금으로 지급된 건의 경우는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7. 장기보관중인 세입세출의 현금의 세입조치 시효기간

【질 의】

○○구재무회계규칙 제80조 4항에 의하면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세입세출의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1998년 4월에 가로수 이식하고 예치기간 2년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반환기간』이라 함은
 - ① 지방재정법 제69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제1조(국고예의 귀속)에 의하여 보관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한 2005년 4월 이후인지
 - ②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항의 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보관기간 만료 후 10년이 경과한 2010년 4월 이후인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6조 및 제167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을 보충적으로 보완하는 규칙입니다.
- 따라서 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자치단체의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를 지방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으로 하고 있는 바
 - 위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별도의 시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므로 ①과 같이 2005년 4월 이후에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규칙의 문구 중 민법이 정하는 바는 시효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절차와 요건 등을 민법규정을 준용을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이므로 문구해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기부금의 세입처리 관련

【질 의】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할 경우 통상 세입금을 사업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여 지정기탁금(품)을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세입항목은

회 신

-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기치 않은 세입수요에 대비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세입금중 지정기탁금(품)을 세입항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 구체적인 세입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잡수입-기부금 항목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 지정기탁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탁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지정기탁서를 사전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관련 사용료의 기금편입 여부

【질 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와 △△사가 공동으로 상품권을 발행하여 전세계 여행사에 티켓으로 판매하는 경우

- △△사에서 상품권에 대한 명의사용료로 일정 금액을 ○○시 발전기금에 기탁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 △△사에서 상품권에 대한 명의사용료로 일정 금액을 ○○시 발전기금에 기탁하는 것은 상호간의 반대급부에 의한 것으로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정의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바
 - 수익금 성격이므로 발전기금설치조례상에 재원중 수익금 항목이 있으면 기탁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0. 공연수입금의 『세입세출외로 적용할 수 있는 경비』 적용여부

【질 의】

○○구에서 『난치병 돕기 한마음 음악회 행사』 예산을 편성, 지출하고 동 음악회를 △사와 공동개최하여 그 수입금으로 암, 백혈병, 심장병 등으로 고생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돕기 위해 동금액을 ○○구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일시 적립 후 연말에 치료비를 전달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제29조의3(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공연 수입금 등 일반적인 세입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총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모든 수입은 우선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고 이후에 지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담금, 보증금, 예치금, 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토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즉, 세입세출외 현금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지만 향후에 세출예산이 아닌 목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가 하자보수보증금, 자치단체 직원들의 봉급일에 적립해 둔 의료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공연수입금을 일시적으로 보관 후 연말에 난치병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치료비로 전달하기로 주최기관간 상호 약정하였고, 공연참석자들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근거하여 자치구가 일시적으로 보관 후 난치병 어린이에게 전달하였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